



##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학관련 강조사항 알림

### 1. 관련근거

- 가.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 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1630(2018.2.23.)"사회복무요원 복학관련 강조사항 알림"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매학기 초 실시하는 수학여부 실태조사에 앞서 복무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발급 시 (대학 등 복학신청용) 참고사항 란에 연가기간 (시작일자 ~ 종료일자)을 명시하여 발급
- 나. 위반자는 복학 취소, 경고 ( 5일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안내
- 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대학(원)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인 사람 중 ' 18년 4 ~ 6월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재강조 안내

불임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 기준 1부.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수신자 종로서비스안전센터장, 충정로서비스안전센터장, 동대문서비스안전센터장, 종합운동장서비스안전센터장, 신대방서비스안전센터장, 당산서비스안전센터장, 경북궁서비스안전센터장, 옥수서비스안전센터장, 도곡서비스안전센터장, 상계서비스안전센터장, 한성대서비스안전센터장, 동작서비스안전센터장, 화곡서비스안전센터장, 광화문서비스안전센터장, 군자서비스안전센터장, 강동서비스안전센터장, 성산서비스안전센터장, 동묘서비스안전센터장, 석계서비스안전센터장, 태릉서비스안전센터장, 대공원서비스안전센터장, 이수서비스안전센터장, 보라매서비스안전센터장, 잠실서비스안전센터장, 모란서비스안전센터장, 서비스안전지원사업소장, 부천서비스안전센터장

과장 손대희

부장 엄영수

처장 전결 02/26  
정양선

협조자

시행 비상계획처-1808 (2018.02.26.)

접수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http://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527 전송 / thseo11@smrt.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